## C - 11 - 2012

- (바)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1.2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사) 계단을 설치하는 때에는 각각의 발판으로부터 높이 2m이내의 머리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아) 최 상부의 발판은 계단참에 접하거나, 상부 발판과 계단참의 격차가 발판 높이와 같게 하여야 한다.

## 6. 안전난간

- (1) 일반요건
  - (가) 안전난간은 추락예방을 위한 장치로써 작업자가 추락위험이 있는 지역에 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.
  - (나) 높이 1m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- (다)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20cm이내인 경우와 안전난간과 동등한 구조의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.
  - (라) 계단과 인접 구조물과의 사이가 3cm이상일 때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난간

안전난간의 구성요소는 상부 난간대, 중간 난간대, 난간기둥, 발끝막이판 등으로 구성된다.

- (가) 계단 발판에서 상부 난간대까지의 높이(H)는 0.9m이상 1.2m이하이어야 한다.
- (나)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발판의 중간지점에 설치하며, 그 공간의 폭 (B)은 60cm 이하이어야 한다.
- (다) 발끝막이판은 난간 바닥의 물체가 낙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단 바닥면으로부터 10cm이상의 높이(h)를 유지토록 하고, 바닥면과의 틈새 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